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(특허청 고시)」

◇ 제·개정 이유

- 「코로나19」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재 운영이 가능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추진

◇ 주요내용

- 가.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특허 창출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(안 제8조)
 - 출원료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, 방법, 기준 및 부여할 기간과 신청 방법, 사후 신청 등을 규정
- 나.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 경우 기간경과구제신청료 상당액을 지식재산포인트로 부여 (안 제3조, 제3조의2)
 - 코로나19 영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지식재산포인트로 환급
- 다.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 (별지 제2호서식)